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2. 5.(월) 11:00 < 2.6.(화) 조간 > 배포 2024. 2. 5.(월)

대학·출연연의 기술이전·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

-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- 통상실시 원칙 폐지, 사업화 지원대가 수취근거 신설, 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 규제완화 등

앞으로 대학·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*(이하 공공연)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·사업화할 경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.

*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국공립연구기관, 기타 공공연구기관, 국공립대, 사립대 등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공공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, 사업화 유인 강화, 투자 촉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.

우선,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실시·통상실시·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. 또한,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현금·주식·채권 등 수취 방식을 다양화한다.

아울러,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편한다.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,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완화(20%→설립시 10%)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,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. 또, 민간의 역량 향상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도 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.

산업부는 입법예고(2.6~3.18)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.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	책임자	과 장	서성태 (044-203-45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연 (044-203-454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기술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(안)**

구분	주요 개정내용		관련조항
개정	법제명	· (現)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→ (改)「기술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	-
개정	정의	· (기술) 물질(유전자원을 포함), 데이터 등 추가 · (공공연) (現) 국공립연, 출연연, 특정연, 대학 등 → (改) 전문연, 지자체출연연, 국방과학연구소 추가	안 제2조
신설	기술사업화 전주기 종합지원사업	· 기술사업화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지원하기 위한 사업 관련 규정 명시	안 제9조
신설	국가기술은행	· 기술이전·사업화 정보관리체계로서 국가기술은행 설치·운영 근거 마련	안 제19조
개정	기술거래사	· 휴폐업 제도, 2인 이상 합동사무소 설립근거 신설 등	안 제25·26조
개정	기술사업화 전담조직	· 공공연 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완화 (기술지주회사 등 별도 조직을 전담조직으로 간주)	안 제31조
개정	공공연 기술이전방식	· 통상실시(非배타적 실시권) 원칙 폐기, 공공연이 기술이전방식 자율 결정(통상실시·전용실시· 양도 등)	안 제33조
신설	사업화 유인	· 사업화 지원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다양화(현금·주식·채권·어음·주식매수청구권 등)	안 제35조
개정	기술지주회사	① 설립규제 완화 - 보유기술 제한(녹색·첨단기술) 폐지 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 출자 시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지분율 완화 : (現) 50% → (改) 30%	안 제36조
		② 기술지주회사 운영 자율성 확대 - 자회사 의무 지분보유 비율 완화 : (現) 2년간 20% 유지 → (改) 설립 시 10%	안 제37조
개정	기술신탁 관리기관	· (現) 비영리기관만 허용 → (改) 영리기관 허용	안 47조